



제316회 정례회

2012.12.12.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2년 12월 4일

○ 회부일자 : 2012년 12월 6일

3. 제안이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한시기구 등의 존속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조번호를 개정함(안 제1조)
- 나. 여유기구 및 한시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 다. 교육국 및 행정관리국에 두는 과·담당관 단위의 한시기구를 명시하고,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함(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제1항, 제2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은 목적 규정 외에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약칭’을 만들어 사용함(안 제1조, 제2조, 제8조)
- 마.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 관련 조번호를 변경함(안 별표 2부터 별표6까지)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고, 한시기구 등의 존속을 조례로 정하는 한편, 일부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제3조제2항 중 “본청의 과·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를 “본청의 과·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각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각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의 존속기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2]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42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 원 도 서 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21
청 원 도 서 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단재로 2494-1
보 은 도 서 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6-10
옥 천 도 서 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3길 7
영 동 도 서 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220
진 천 도 서 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1길 11
괴 산 도 서 관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2길 38
증 평 도 서 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54
음 성 도 서 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126번길 29
금 왕 도 서 관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응천서길27번길 33
단 양 도 서 관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2길 18

[별표 3]

학생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3조 관련)

명 칭	위 치
제천학생회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길 7

[별표 4]

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제44조 관련)

명 칭	위 치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진여울길 65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153-3

[별표 5]

교직원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제45조 관련)

명 칭	위 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 990

[별표 6]

영어체험센터의 명칭과 위치(제46조 관련)

명 칭	위 치
북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남부영어체험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호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본청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p> <p>2. · 3. (생략)</p>	<p>제1조(목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 ----- ----- ----- -----.</p> <p>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 -----.</p> <p>1.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p> <p>2.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 (생략)</p> <p>② <u>본청의 과·담당관과 여유기구,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본청의 과·담당관</u>----- ----- ----- -----.</p>
<p>제6조(교육국) <u>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19.(생략)</p> <p><신설></p>	<p>제6조(교육국) ① <u>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19.(현행과 같음)</p> <p>② <u>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7조(행정관리국) <u>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21. (생략)</p> <p><신설></p>	<p>제7조(행정관리국) ① <u>행정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p>1. ~ 21. (현행과 같음)</p> <p>② <u>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3645호, 2012.2.29, 전부개정]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본청 실·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서울특별시 교육청		4실·국 이내
부산광역시 교육청		2실·국 이내
경기도 교육청		5실·국 이내
그 밖의 특별 자치시·광역 시 교육청	인구: 400만명 이상 학생: 80만명 이상	3실·국 이내
	그 밖의 경우	2실·국 이내
그 밖의 도 교육청	인구: 300만명 이상 학생: 60만명 이상	3실·국 이내
	그 밖의 경우	2실·국 이내

비고

1. 실·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학생 수는 각급 학교의 해당 연도 4월 1일 기준 학생 수를 말하고, 인구 수는 주민등록표상의 해당 연도 4월 1일 기준 인구 수를 말하며, 학생 수와 인구 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46호, 2010. 2. 26.]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230호, 2010. 6.29.]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항